

보도 일시	배포 시	배포 일시	2023. 2. 22.(수)
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치연 (02-2100-1685)
		담당자	사무관	윤세열 (02-2100-1686)

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 범위 관련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매일경제 2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매일경제에서는 2월 21일 「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, 회사채·국채 투자도 허용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는 예·적금이나 주식뿐 아니라 국내 회사채와 국채도 포함된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 재산에 회사채와 국채 등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-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·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